

의안번호	648
------	-----

- 懸案事業調査特別委員會 -
調査結果報告



懸案事業調査特別委員會

[보고 순서]

I. 조사 개요 -----	2
II. 운영 현황 -----	3
III. 조사 경과 -----	4
IV. 조사 결과	
1. 호암택지 개발예정지 개발유보 -----	5
2.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	9
3.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	13
V. 특위 종합의견 -----	18
VI. 관계공무원 답변요지 -----	20
VII. 근로자종합복지관 현장방문조사 ---	54

- 懸案事業調査 特別委員會 -

調査結果報告

- 호암택지 개발사업 추진유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다수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혹을 해소하고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구성한 제4대 충주시의회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보고임

I. 調査概要

□ 조사기간 : 2005. 9. 22 ~ 2005. 12. 23

□ 조사범위

- 호암택지 개발사업 추진(유보)상황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 조사방법

-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관련 증인 출석진술 조사
- 서면 및 현장확인 조사

□ 조사중점

- 정책결정(변경)과정에 시민의견 수렴 등 절차적 적정성 여부
- 정책 변경의 논리 및 당위성이 타당한지 여부
- 정책 변경의 원인과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

II. 運營現況

特別위원회 구성(11명)

위원장	정 태 갑	간 사	김 대식
위 원	김종하, 허종희, 우종섭, 김기정, 김용성, 고명종, 김기선, 이종갑, 황병주		

일정별 증인 출석현황(19명)

일정별	조 사 건	출 석 증 인	비 고
10. 24 (월)	호암택지 개발지구 추진유보	김태섭, 임종관, 이주환, 안승준, 이종률, 이상우, 김용래	2차
11. 1 (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권순만, 황창식, 이장섭	3차
11. 8 (화)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실태	홍종수, 김의준, 김형배, 최용태, 이상우, 김용래	4차
12. 1 (목)	근로자 종합복지관 현장조사	없 음	5차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실태 추가조사	노희경, 김진해	
	충주시장 증언청취 (조사대상 3건)	한창희	

조사자료 요구현황 : 따로 붙임

III. 調査 經過

구 분(차수)	일자	장 소	내 용	비 고
제10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5. 9. 2	본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및 위원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결의 : 운영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제604호) - 위원선임 : 정태갑 의원외 10명 (의안번호 제605호)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위원회	2005. 9. 22	산업건설위 회 의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정 태 갑 의원 - 간 사 : 김 대 식 의원 ○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작성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5. 10.11	본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 	
특위위원 간담회	(2회)	산업건설위 회 의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간담회 [9.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안특위 세부운영계획 협의 ○ 2차 간담회 [1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요구 자료 협의(5건요구)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위원회	2005. 10.24	산업건설위 회 의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암택지 개발사업 유보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상황 보고 및 중언조사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위원회	2005. 11.01	산업건설위 회 의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상황 청취 및 중언조사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위원회	2005. 11.08	산업건설위 회 의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복지관 운영실태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상황 청취 및 중언조사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위원회	2005. 12.01	산업건설위 회 의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복지관 현장방문 조사 ○ 근로자복지관 운영실태 추가조사 및 충주시장 증언 청취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위원회	2005. 12.09	산업건설위 회 의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안사업조사 특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IV. 調査結果

1. 호암택지 개발예정지구 개발유보 건

□ 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

- 면적 : 호암동·지현동·직동 일원 1,017천m²(308천평)
- 주택공급 : 5,300호(임대 2,300호) / 수용 16,600인
- 사업기간 : 2006년 ~ 2011년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 추진경과

- ① 2002. 12. 27 :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 체결(시 & 토지공사)
- ② 2004. 4. 26~27 : 첨단산업단지 조기 추진 및 공공기관 유치 협의를 위한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출장·면담
- ③ 2004. 7. 6 : 지역종합개발 조기시행 요청(시→토지공사)
- ④ 2004. 8. 27 :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요청에 따른 호암지구 택지개발계획 회신(토지공사→시)
- ⑤ 2004. 9. 8 : 호암택지 개발계획에 따른 시 의견 통보
- ⑥ 2005. 4월 :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충주시)
- ⑦ 2005. 5. 21 :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공람 요청(건교부→시)
- ⑧ 2005. 5. 27~6. 15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충주시)
- ⑨ 2005. 6. 16 :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 협의 안건으로 상정
- ⑩ 2005. 6. 29 : 택지개발 유보의견 제출(시→건교부)

- 기업도시내 18만 4천평, 첨단산업단지내 3만 7천평의 주거용지 개발계획에 따른 택지 과잉공급 문제와
- 호암지 생태공원 관리 및 보존문제 등을 근거로 택지지구 지정유보 의견을 충북도에 제출

□ 조사내용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 의사결정 과정은 적정했나에 대하여

- 서류 및 증언조사에서 밝혔듯이 본 사업은 2004년 7월에 충주시의 요구로 시작되어 2005년 4월까지 부시장이하 집행부 공무원 대부분이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절차를 이행하던 중
- 지금까지의 추진방향과 다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정정책 자문위원회, 주민공람공고 등 나름대로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 대의기관인 시의회나 이해관계 주민,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주민공청회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가 없이 결정됨으로써 시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유보결정시 주민공람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나에 대하여

- 호암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기간(2005. 5. 27~6. 15일)동안 호암동과 지원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제출한 주민의견 청취공람 대장(사본)을 보면
- 의견제시자 39명 중에 반대의견은 모두 8명 뿐인 점을 볼때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의견을 반영한 지정유보 결정은 공람결과와는 상충되는 것임
- 6. 10일자 별도의 반대의견을 낸 양승모(호암동 통우회장)씨의 경우, 5. 31일자 주민의견 청취대장에는 상기와 같다고 하여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였는데 상동과 같다는 표시 위에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이라고 다른 굵기의 글씨체로 반대의견이 써 있어 대필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적의 조치하기 바람

▶ 기관간 협약에 의하여 시행된 사업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유보 요청함으로써 시의 대외적 신뢰도나 공신력에는 문제가
없는가에 대하여

- 호암택지 개발사업이 지난 2002. 12. 27일 충주시와 한국토지
공사간에 체결된 「충주시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에 따라 추진
되고 2004. 7. 6일 충주시가 시행을 요구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 본 협약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하나 양 기관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된 협약인 만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의사와 반대되는 유보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할 때는 최소한
토지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신력있는 기관으로서 신의의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더욱이 본 사업이 당시 지역 최대현안인 이류면 「충주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기 착공하고자 시에서 적극 나서서
요구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 금번 시의 일방적인 유보의견 제출로 인해 향후 대규모 국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공사 등 여타의 국가기관 사이에
우리 시의 공신력이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이에 대한
향후 집행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임

▶ 호암택지 개발사업 유보의 논리가 타당한가에 대하여

- 시의 주장대로 기업도시내 택지 18만 4천평 등 관내 택지 과잉
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3, 4년 정도 호암택지
개발사업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기업도시내 택지 개발에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는
논리임

- 더욱이 기업도시가 선정된 2005년 7월 이전인 2005년 4월에 이미 택지개발 재검토를 지시한 점으로 볼 때 본 사업과 기업도시 개발문제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유보 논리의 타당성을 나중에 역으로 맞춘 억지 논리임
- 또한 택지개발로 호암지 오염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현 제도상 자연녹지내 개별 택지개발이 가능해 오히려 무질서한 주택 입지로 인해 호암지의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지만
- 완벽한 오폐수 차집관로 등 체계적인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호암지의 수질보호에 유리하다는 「청정삶터 녹색충주 21 실천 협의회」 등 전문가들의 지적임을 감안할 때 이 또한 타당성이 없는 모순된 논리임
- 본 건으로 인해 향후 시에서 추진하려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일부 단체 등의 반발을 이유로 중도에 포기해야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으며
- 특히, 지난 11. 3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주시의 유보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시의 유보논리가 전혀 타당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충주시의 대외적 공신력이 크게 실추되었다 할 것임

▶ 유보의견으로 계획변경시 충분한 검토는 되었는가에 대하여

- 2005. 4월 수립된 「호암택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결재와 관련한 시장의 재검토 지시사유가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언마다 약간씩 상이(택지공급 과정, 호암지생태계 파괴 등)한 점과
- 조사를 통해 들어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 행정의 신뢰도, 토지공사를 비롯한 국가기관과의 관계 등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안된 점을 볼 때 성급하게 결정되어 시정의 난맥상을 노정시킨 대표적 사례라 하겠음

2.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건

□ 개요 및 추진경과

▶ 지정개요

- 지정기간 : 2005. 8. 18 ~ 2010. 8. 17 (5년간)
- 대상면적 : 수안보면 및 동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882.292km²
- 지정공고 : 2005. 8. 12 / 충청북도지사

▶ 추진경과

- ① 2005. 4. 28 : 1읍3면 15개리 87.14km²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지정
- ② 2005. 5. 27 : 충주시 전지역이 「투기지역」 지정(국세청)
- ③ 2005. 7. 12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여부 검토 및 토지시장동향 조사보고 요청(충북도 → 시)
- ④ 2005. 7. 15 : 토지시장 동향 조사결과 제출(시→도)
* 전년대비 2005년 지가 : 47% 상승
- ⑤ 2005. 7. 20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심의자료 제출요구(도→시)
- ⑥ 2005. 7. 27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심의자료 제출(시→도)
 -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지가 급등으로
 - 수안보 및 동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인 882.29km²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 ⑦ 2005. 8. 4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시의견 제출(시→도)
 - 기업도시 주변 6개면(주덕, 이류, 신니, 노은, 앙성, 가금)이외의 지역은 거래가 평소와 같거나 오히려 저조한 상황으로
 - 6개면 이외의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
- ⑧ 2005. 8. 8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확대지정 통보(도→시)
- ⑨ 2005. 8. 12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확대지정 공고(도)

□ 조사내용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 8. 4일 도에 보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6개면으로 축소해 달라는 건의 공문이 단순 주민 무마용 공문이라는 데 대하여

- 8월 16일 의원간담회시 충주시장은 기업도시 반경 2km정도만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충분하며 이에 따라 충북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축소 지정해 달라는 건의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였으나
- 11월 1일 본 위원회 증언에서 담당과장 등 일부 증인은 8월 4일 도에 건의한 공문은 부동산중개업협회 등의 반발에 따라 도 실무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의 당초 의견인 전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이 주민반발 무마 또는 책임회피를 위해 6개 면으로 축소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충청북도에 보내게 되었다고 서로 다르게 증언을 하였는 바
- 이는 7.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이나 기업도시로 선정된 타 지역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해 보지도 않은 채 보고시한 지키기에만 급급해서 전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충북도에 서둘러 제출했다가 부동산중개업협회 등 일부 이해 관계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뒤늦게 여론을 감지하여 시장지시에 따라 축소지정 건의공문을 발송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만일, 담당과장 등 일부 증인의 증언대로 충주시의 의견과 전혀 다른 책임회피용으로 공식문서를 작성, 대외기관인 충북도에 보낸 것이라면 이는 시민을 기만한 처사로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임

▶ 허가구역 확대지정이 기업도시 개발지역 등 이주민들의 대토 문제와 혁신도시 유치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7. 15일자 충북도에 확대지정 의견공문을 보낼 당시 혁신도시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순전히 부동산 지가상승률만 따져서 시의 의견을 보냈다고 증언하는 등 증인들 간에 약간씩 혁신도시와 관련된 증언이 서로 상이함
- 이를 볼 때 본 위원회는 혁신도시 유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의 직접적인 요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된 대토문제는 본격 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데도 최소한 2년 이상이 소요되고 대토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주민 대토문제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했다는 주장도 논리상 맞지 않음
- 만일, 시의 주장대로 이주민 대토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해서 지정했다 라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축소하는 시점도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민들의 대토문제가 완료될 때까지 확대 지정하는 것이 논리상 더 타당하며
- 금번 혁신도시가 우리 시에 유치된다면 지가가 더 상승되어 이에 따른 이주민 대토문제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더 연장해야 함에도
혁신도시 발표후 곧바로 축소 해제하겠다는 시의 방침은 앞서 이주민의 대토문제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는 주장과는 완전 배치되는 것으로 논리에 맞지 않음

▶ 7. 27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의견 제출까지의 과정은 적정했나에 대하여

- 시민들에게 엄청난 파급영향을 미치는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나 기업도시로 선정된 타 지역의 지정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도 부족했으며
- 또한 관련부서나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한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도 없이 오직 지가업무만 전담하는 일부 관련 공무원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졸속으로 결정된 정책이라 판단되며

금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건은 충주시장의 증언에서 이미 시인한 바 대로 전형적인 의사결정 실패사례라 하겠음
-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은 물론, 도에서 확대지정이 결정된 후에도 전혀 사실통보가 없어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충주시와 상반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축소 지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충북지사에게 보내는 사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의회와 집행부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시킨 원인이 되었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바임

3.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건

□ 개요 및 추진경과

▶ 운영개요

▶ 추진경과

- ① 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 : 2001. 12. 24 ~ 2003. 6. 10
 - ②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03. 5. 20
 - ③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시정조정위원회) : 2003. 6. 30
 - ④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계약 체결 : 2003. 7. 16

▶ 예산지원 상황

(단위: 백만원)

년도별	지 원 사 업 내 용	금 액	비 고
	계	414	
2003년	위탁운영비(건물유지, 프로그램 지원 등)	44	요구액 전액 반영
2004년	유지비, 위탁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시설비,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270	"
2005년	위탁운영비(건물유지, 프로그램 지원 등)	100	

※ 2005년 예산요구 및 반영내역

- 당초 : 442백만원(어린이집 277, 운영비 165) 중 운영비 100만원 반영
 - 추경 : 308백만원(어린이집 270, 운영비 38) 요구액 전액 삭감

□ 조사내용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 한국노총의 어린이집 시설사업비 요구시 사전 충분한 검토후 예산을 계상하였는가에 대하여

- 어린이집 시설계획에 의하면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1층 68평과 2층 81평 등 총 149평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식당을 지하 1층 36평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 보육시설의 법적 설치기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선정하여야 한다는 기본 입지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 또한 동 규정에 의한 시설별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하고
 - 조리실은 채광이 잘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영유아 50인이상의 보육시설은 영유아 1인당 2.5m²이상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 2층 81평에 어린이집을 시설하고 지하에 어린이집 식당 설치를 계획한 본 어린이집 시설계획 자체가 법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인근 풍물시장 등 장날 어린이 안전 확보가 어려워 기본입지 조건과도 맞지 않고 각종 소음과 혼잡 등 유아교육 환경측면에서도 아주 부적합한 지역임을 관련부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최소한의 검토사항인 법적 기준조차 제대로 검토가 안되었고 일부 증언에서 밝혔 듯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보다는 한국노총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업의 부당성을 알면서도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음
- 또한 당초예산 심의시 사업의 부당성 때문에 전액 삭감한 예산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그대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다시 계상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시의회와 한국노총간 심각한 갈등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함

▶ 1회 추경예산 요구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가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민간단체 등에서 예산요구가 있으면 소관부서에서 관련 법령, 사업의 타당성, 사업으로 인한 파급영향(효과)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결정자에게 보고하여 결심을 받은 후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절차임에도
- 본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집사업은 2004년 11월 24일에서야 한국노총으로부터 정식으로 예산이 요구되어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충분한 검토가 없이 '05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음
- 또한 당초예산이 심의·확정되기 전인 2004. 11월 30일에 이미 봉제교실 예산으로 어린이집 주방집기를 구입해 줌으로써 한국노총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설치를 당연시 하도록 하였으며
- 더욱이 3억원에 달하는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정책결정자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1회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겠음

- 본 건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전액을 위탁계약 제10조의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관리의 규정」,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 민간경제 침해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삭감한 것으로
- 사정 변경이 없이 다시 추경예산에 동일한 명목으로 계상한 것은 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여도 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 활동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 하여 예산 삭감과 동시에 천막치고 레미콘노조까지 동원한 격렬한 시위를 하는 행위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으로 심히 우려됨
-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건을 계기로 민간단체의 예산요구에 따른 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이며
더욱이 본격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후 봇물처럼 늘어나는 무분별한 민간부문의 예산요구에 대응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운용 모델을 확립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촉구함

▶ 어린이집 시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협약 제10조에 의한
수탁자 자체의 사업인가에 대하여

- 증인들의 증언에서도 밝혔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당시 복지관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방향에서 복지관 운영방향이 설계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노총에 무상위탁, 임대사업을 통한 자체 관리비 충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운영 조례와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후 임대에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순수한 근로자 복지시설로 운영하기로 정책방향이 바뀌었는 바, 이 당시 운영방향에 맞게 체결된 협약서도 당연히 상황에 맞추어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둔 채 예산이 요구된 어린이집 시설은 당연히 위탁 계약서 제10조의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관리조항'에 따라 한국 노총이 자체 부담해서 시행하여야 하는 자체사업이며 이를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탁계약서 제10조 :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관리조항]

"을(한국노총)은 복지관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모든 경비는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갑(충주시장)은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

- ▶ 이밖에 특위조사를 통해 심도있게 조사했던
어린이집 주방기구 구입문제,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 43평 강제이전 문제 등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조치완료된 사항으로 별도의 지적 및 요구사항은 생략하고 주방집기 구입과 관련된 징계와 관련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바
이는 특위종합의견에 요구키로 함

V. 特委 綜合意見

- 본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는 시정의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소홀히 한 채 결정됨으로써 시민들의 뜻이 시정에 올바로 반영되지 못해 많은 오류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시민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따라
- 최근 가장 논란이 된 호암택지개발사업 유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등 3건의 사안에 대하여 한창희 충주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19명을 증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하였음
- 6차에 걸친 특위조사를 통해 오로지 중언에만 의존한 조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실체적 진실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참여위원들의 의욕적인 조사활동에 힘입어 3건의 사업 모두가 충주시장이 정책결정에 시민참여를 소홀히 하고, 투명성 결여 및 독단성에 기인한 전형적인 정책결정의 실패사례임을 확인 하였고
- 각 사안별로는 구체적인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 있
 - 호암택지 개발사업 유보 건은 건교부의 결정에 따라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건은 지난 8월 16일에 충주시의회에서 충북도에 철회건의한 대로 축소 지정하기 바람
 -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집기구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최하위직 공무원에만 가장 큰 책임을 지우는 등 형평에 맞지 않다 하겠음

-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건 조사를 통해 집행부 스스로가 정책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자인하였으며 앞으로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대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하는 등 금번 현안사업조사 특위활동을 통해 향후 충주시의 정책결정 패러다임이 한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본 특위의 조사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부시장, 국장, 과장 등 시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일부는 소신없는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문제를 확대시킨 점이 조사된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공무원의 자성과 분발,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촉구함

VI. 關係公務員 答辯要旨

1. 호암택지 개발예정지구 개발유보 건

□ 경제건설국장 추진상황보고시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우종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암택지 개발사업 유보 이유는 ?○ 시예산 투자없이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데 왜 유보하였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도시내 택지 184천평, 첨단산업 단지내 73천평 등 총 257천평의 택지가 새로 생겨나 이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경우 호암택지지구는 역전5지구처럼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오염 등이 우려됨○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택지 과잉공급을 막기 위하여 공급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유보한 것이지 개발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님
김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 12. 27일 계획하여 지금까지 3년여 동안 추진한 사업을 유보한 것은 행정적으로 착오 아닌가 ?○ 기업도시는 10년, 15년후에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데 기업도시를 이유로 호암택지를 유보한 것은 행정착오 아닌가 ?○ 유보시킨 것은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당시 기업도시 등을 생각지 못했고 2004년 하반기 갑자기 현안이 생겨서 유보한 것임○ 호암택지개발사업도 2011년 완공되고 입주자체도 2015년 정도 가야만 완료되어 양 계획이 거의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 것임○ 지금 당장 시작계획은 없고 중앙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처리할 계획임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 4월 택지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불과 2개월 만인 6월에 유보한 이유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이 계획이지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정리해서 보고드린 사항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공사에서 첨단산업단지 개발만으로 이익이 없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게 아닌가? 본 사업유보로 시와 토개공간 신뢰에 문제가 없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뒷 얘기지 명시적인 합의사항이 아님 토개공에서는 지금도 택지개발사업을 하자는 주장이고 우리는 좀 기다리자는 것임
고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배경은? ○ 택지개발 유보이유로 든 택지 과잉공급과 환경문제는 사업유보를 위해 개발한 억지 논리 아닌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택지수요가 아니라 고속도로 등이 개통되면 개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한 것임 ○ 호암택지가 미리 개발되면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내 택지개발에 문제가 있어 기업도시와 연관시킨 것이고 환경문제는 사업이 완료된 후 개발이 안되어 나대지로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임
김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16일 정책자문회의 전까지 주관부서에서 적극 추진하던 사항이 회의 이후에 갑자기 유보된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단체의 반대나 외압 등에 의해서 유보된 것이 아님

□ 김태섭 중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사업이 어떻게 토지공사와 처음 추진하게 됐는지 ? ○ 2002. 12. 27 협약서는 어떻게 체결하게 되었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이 전계획이 나와서 충주에 30~5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예정지를 세군데 추진해서 처음 추진하게 된 것임 ○ 첨단산업단지 추진이 매우 어려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택지나 관광사업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협약을 체결함
이종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7월부터 시행돼서 유보 신청된 2005. 6. 29일까지 1년여동안 계속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나가다가 갑짜기 유보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유보논리도 궁색하여 의회에 협의할 경우 반대의견이 예상되니까 의회와 협의없이 유보결정하여 추진한 것 아닌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내 택지보다 먼저 시행되면 시 발전에 영향이 있을까봐 3, 4년 정도 시차를 두어 추진하자는 것이지 아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유보결정이 난이상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됨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사업이 첨단산업 단지 개발사업을 하는 토개공측에 개발이익을 주어 조기에 사업단지를 착수하고자 시작된 것이 아닌가 ? ○ 협약서의 금농2지구에서 호암지구로 변경된 이유는 ? ○ 호암택지개발 유보시 첨단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문제가 없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산업단지사업은 미분양 등으로 토개공이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를 꺼리고 있었는데 이 개발협약을 통해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조기 추진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함 ○ 2004년 토지공사 출장시 호암, 안림, 금농 등 3개 지구를 제안, 토개공에서 호암지구로 검토해서 추진된 것임 ○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금년 말이면 모든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 유보결정을 철회 할 용의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정태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종합개발계획이 법적 효력이 있나 ? ○ 택지개발사업 유보신청이 토개공과의 지역개발협약을 파기한 것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구속력은 없고 상호신뢰에 의해 이루어진 협약임 ○ 택지개발사업 시기를 유보하는 것으로 협약을 파기한 사항은 아니며 사업 추진시기 유보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토개공과 협의가 되면 신뢰도 하락 문제가 없다고 봄

□ 조인목 증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27일 토개공의 회신공문에 언급된 호암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 ○ 호암택지개발사업이 유보되었는데 그때는 이러한 문제를 몰랐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 그 당시, 부시장님 권한대행시 본 사업이 경제적 효과가 매우 커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음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개공에서 호암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능지구는 10만평이 안되고 안림지구는 이미 상당히 지가가 상승된 지역으로 토지가가 저렴한 호암지구가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

□ 임종관 중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암택지개발 추진계획서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왜 시장은 결재를 안하셨는가 ? ○ 시장님이 계획서에 대한 결재를 하기 전까지는 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 개발쪽으로 열심히 추진하다가 본 계획에 결재를 하지 않은 금년 4월이후 시정자문회의 자문과 공람공고후 받은 14명의 반대의견을 근거로 유보신청을 한 거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를 3월중순경부터 작성하여 4월 초 결재에 들어 갔는데 시장님께서 환경 문제 등을 더 검토하라고 결재를 안하셨음 ○ 예
김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2년동안 적극 추진해 오던 택지개발사업이 갑자기 중단된 것은 시장님의 뜻인가 ? ○ 주민공람 부분도 집행부와 가까운 분들이 주로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람은 어떻게 추진 되었나 ? ○ 유보결정을 하려면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한데 여론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님의 뜻은 잘 몰라도 결재를 안하신 것은 사실임 ○ 동에서 주민공람을 위해 통장회의, 마을단위 회의 등을 통해 통장이나 대표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임 ○ 시에서는 유보의 의견을 보낸 것으로 유보의 최종결정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며 시는 건교부의 결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는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김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재당시 시장님이 지시하신 검토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암지가 충주의 절줄인데 택지개발이 호암지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아니냐며 검토를 지시하였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암택지개발사업의 사업 효과나 그동안의 추진과정 등을 시장님께 보고했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 사항은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음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님이 미결한 택지개발 추진계획서가 사업규모에 비하여 계획내용이 부실해서 시장님이 사업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정책자료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 ○ 본 보고서가 추진상황만을 보고하는 문서라면 왜 농정국 등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굳이 받았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이 보고서에는 첨부물로 협약서, 도면, 토지공사에서 선정돼 온 공문 등이 전부 첨부돼 일괄서류로 결재를 받았으며 이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한 문서임 ○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관련 부서에 알려주는 차원에서 협조를 받은 것임
고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님께서 호암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얼 몰랐다고 하는 말인가 ? ○ 공람공고전에 유보결정이 된 사항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도 그건 잘 모르는 사항임 ○ 주민공람 요청이 있기전에 건교부 담당자와 전화통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유보의견을 건의한 바 있음

□ 이주한 증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인이 재직기간 동안에는 호암택지개발이 전혀 언급이 안되었나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공사는 주로 첨단산업단지 개발 문제만 협의하였음 다만, 구두로 시청주변 금능2지구 개발 건이 거론되었음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이 없는 산업단지 개발을 조건으로 택지개발이나 관광개발 등의 사업을 협조하는 것으로 토개공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것인가 ? ○ 충주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기본협약의 효력은 ? ○ 지역개발과에서 도로과장인 증인에게 협조를 구할 때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협조를 거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거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천안, 청주시도 시 재정으로 안되니깐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토개공이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구체적 사안별로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사업별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는 신의의 문제로 보면 됨 ○ 그렇죠
정태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에 협약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이 없는데 그 이유는 ? ○ 호암택지, 금능2지구, 안림지구를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에 요청했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토지공사에 산업단지 사업참여를 사정하는 입장인데 당신 이거 안하면 어떻게 한다는 제재를 할 수 없었음 ○ 제가 재직중에는 그런 사실이 없음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암택지는 어떻게 지정되었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능택지는 난개발 문제 때문에 제가 구두로 토지공사를 참여 시킬려고 제안했으나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하여 그만 두었으나 호암택지건은 잘 모름

□ 안승준 증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님은 이미 토지공사의 회신공문을 통해서 호암택지 개발사업의 위치, 규모 등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2005년 4월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장이 모두 협조한 지역개발과의 추진계획서에는 결재를 고의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당시 저도 협조공문에 사인한 입장으로 그 문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님
고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님께서 9월 2일 공문을 선결하면서 호암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알게 되신 거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게 된 것임

□ 이종률 증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4월 작성된 추진계획에 시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때 다른 지시가 있었나 ? ○ 2005. 6. 16 시정정책자문 회의에서 시장님이 호암택지 개발에 반대한다고 했죠 ? ○ 공람결과,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이 시청이나 동과 밀접한 분들이 많은데 의도적으로 반대를 유도하지 않았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7일자 지역개발과장으로 부임후 호암택지건을 모르다가 3월경 소문으로 알게되어 중간보고차원에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이고 보고당시 특별한 지시없이 재검토하자고 해서 있다가 6월에 건교부의 공람공고가 내려온 것임 ○ 격론이 오갔지만 결론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음 ○ 전혀 그런 적 없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이종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정책자문회의가 열린 6월에 이미 시장님은 유보로 결정하고 추진해 놓고서 이제와서 타당성을 역으로 맞추다보니까 그 당시 결정도 안된 기업도시(7. 8결정)의 택지문제를 거론하거나 유보 결정전까지 아무런 의견이 없던 환경과에서 갑자기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어거지로 유보논리를 만든 것임 또 사업을 택지공급에 맞추어 2, 3년 유보한다는 유보논리도 지금 추진하는 것과 10년이상 소요되는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분양가만 높아져 시민들에게 손해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사업의 유보결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의견은 많이 존중되겠지만 최종 결정은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임 ○ 개인적으로는 대단위 사업이 잘 안된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만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 의견을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유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고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결정이 난 시점이 언제인가 ? ○ 2년 반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갑짜기 유보한 것이 시기 상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나요 ? ○ 시정정책자문회의를 왜 유보결정 직전에 했나요 ? ○ 택지공급 과정이 문제가 되었다면 애초에 추진하지 않았어야 하지않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4월 추진상황 보고시 시장님이 재검토 지시해서 ○ 시의 여건상 택지개발이 시기상조로 판단했음 ○ 6월 공람공고기간중에 개최했는데 그 전에는 대외비였음 ○ 그 당시에는 우리시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해서 대비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택지수요가 급박하지 않아서 유보한 것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고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내의 주거지는 애초 계획구상시 단지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러한 부지는 호암택지 협의시 얼마 든지 예견된 것인데 이를 호암택지 유보사유로 들기에 모순되지 않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계획은 그렇지만 실제는 산업단지 내라 하더라도 충주지역 전체가 택지 수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내 한정된 사람만 이용하는 토지라 보기 어려움
김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람결과, 39명 의견제시자 중 10명만 반대의견인데 10반대 의견으로 2년반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유보할 수 있는가 ? ○ 호암동 기관단체장들이 모여서 시정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앞장서자고 논의한 적이 있는데 어째서 통장협의회에서 전체가 반대했다고 하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만 전적으로 참고한 것이 아니고 정책자문회의나 시 자체의 판단 등을 종합해서 유보 결정한 것임 ○ 의견수렴과정에서 전혀 그런 바 없고 자발적으로 낸 의견서임
허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암동에서 제출된 주민의견 공람결과에 30명중 7명만 반대고 나머지 23명은 찬성인데 왜 사업을 유보시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만 전적으로 참고한 것이 아니고 정책자문회의 의견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음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8. 27일 토공의 호암 택지 결정후 2005. 4월 계획 보고까지 8개월간 추진사항은 ? ○ 2005. 4월의 추진계획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부서 국과장의 협조를 받은 것이고 일부 부서는 의견도 써놓은 것 아닌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3월경에 택지개발계획을 알았고 그 전에 전혀 내용을 몰랐음 그 기간동안 공문, 서류 등 공식적인 사업추진은 없었음 ○ 계획수립이 아니고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을 정리하여 보고 드린 것이고 관련부서 협조는 추진상황을 해당부서에 알려 주기 위한 것이었음

이상우 증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9. 8일 사업시행 촉구 공문을 국장 전결로 한 이유는 ? ○ 2004. 9. 8일이후 본 건에 대하여 시장님께 공문이든 구두로든 보고한 적이 있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27일 토지공사에서 공문이 와서 시장님 선결을 받아 내용을 잘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2-3년 전부터 계속 추진 하던 사항이고 더군다나 우리시가 산업단지와 병행하여 사정하다시피 해달라고 했던 사업이고 해서 전결로 처리한 것임 ○ 제 재임기간인 2005년 1월까지는 제가 보고한 적은 없음
고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하루 아침에 번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음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7. 6일 지역종합개발 계획 시행요청을 국장 전결로 한 이유는 ? ○ 2004. 8. 27일 토개공에서 온 공문에 시장님이 서명하였고 그때 분명히 시장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26, 27일 부시장님과 김태섭계장이 토지공사에 출장갔다가 공공기관유치, 택지개발문제가 논의됐고 본부장하고 직원 2명이 함께 충주에 내려와서 호암택지 지구 등 3개소 개발지구를 시에서 택지로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던 그후 김태섭계장이 구두로 보고하길 토개공에서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요구한다고 해서 제 전결로 공문을 보낸 것임 ○ 예 도시개발차원에서 계획적인 택지개발이 시에 유리하고 호암지 수질보호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아 토개공에서 사업을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고 전국 어느 지자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전결 처리한 것임

□ 김용래 증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9월 토개공에 보낸 국장 건결공문을 근거로 고명종의원께서 간담회시 국장께 시장님의 이 일을 알고 계신지를 물었을 때 국장께서는 예민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는데 예민하다는 뜻이 무언가 ? ○ 6. 16일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시장이 호암택지개발 사업을 반대한다고 천명했고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6. 20일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안한 이유는 ? ○ 환경과 반대공문, 주민반대 의견, 정책자문회의 등이 반대를 전제로 한 수순이 아니었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입장에서 “시장님이 알고 있었다, 없었다를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임 ○ 시기적으로 건교부에 의견 내는 기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였음 ○ 수청골, 원호암, 범바우 등 그 곳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지 반대를 위하여 조작한 것이 아님
김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 공람대장중에 양승모씨는 5. 31일에는 반대 의견 없음이라고 했다가 6. 10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고 5. 31일자 의견도 다른 글씨체와 다른 연필로 조작된 흔적이 명백한데 이렇게 공문서를 위조해도 되나 ? ○ 전체 주민 380명 중 39명만 의견을 냈고 이 의견중에서 반대는 10명인데 이 것을 근거로 유보결정이 타당한가 ? ○ 양승모 통우회장이 찬성하면 안되니까 시에서 반대로 유도해서 조작한 거 아닌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작 여부는 잘 모르겠고 통장들이나 호암동에 대고 조작을 시킨 적도 없고 또 이런 서류를 내라고 한 적도 없음 ○ 양승모 통우회장의 의견은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항임 ○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4월 추진계획이 수립되기 까지 집행부 공무원 대부분은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시장님이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 갑자기 중단 된 거죠 ? ○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시장이 지시했는데 어떤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나 ? ○ 본 사업은 첨단산업단지와 연관되고 2-3년간 개발방향으로 추진돼오다가 1-2개월 만에 특별한 사유도 없이 번복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나 대외기관에 대한 공신력 등 많은 부분에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데 ? ○ 소관 국장으로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 시정자문위원회 난상토론, 주민공람 등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지만 시의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함 ○ 업무추진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고 또한 시장님이 시책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부족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생각됨 ○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시에서는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
이종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시의 의견과 반대로 중앙에서 결정했을때 우리시의 행정은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닌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개공에서는 사업을 계속해 가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의 의견과 반대로 결정될 경우 행정에 신뢰에는 문제가 있음
고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하겠다고 했다가는 설명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하는 처사이고 하루아침에 번복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의 절차이행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제대로 의견수렴을 못한 것이고 행정비용에 대한 책임은 서류적으로 의견만 왕래한 사항으로 크게 비용이 투자된 것은 아니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고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암택지 건으로 인해 앞으로 시에서 택지개발 등 사업을 할 때 소수의 반대만 있어도 사업을 유보할 계획 인지 ? ○ 건교부와 토개공에 이러한 사업을 요구할 때 영향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유사사례가 있으면 지금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음 ○ 이런 일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

2.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건

□ 기획행정국장 추진상황보고시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우종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지정전에 인근 원주 등의 여론을 수렴해 보았나? ○ 여론에는 실무과장이 무조건 허가구역으로 묶어야 한다고 해서 묶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의 여론수렴은 없었고 6월말 지가상승율이 전국 평균 및 인근지역 보다 상당이 높아서 지정한 것임 ○ 기업도시로 선정된 4개 도시에 투기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조치한다는 공문이 와서 이를 시장님께 업무보고 해서 결재를 받아 전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임
김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로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 졌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공기과 지방 이전 등으로 전국적인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8. 31 부동산조치로 인해 지가가 하락한 것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직접적인 지가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함

□ 황창식 증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허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확대지정 한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러운 충주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건교부와 충북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어 자체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을 하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지정한다고 해서 자체 판단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나중에 도에 가서 이건 사기 아니냐 따졌음 ○ 7. 12일에 도 공문이 시달되어 7. 14일 까지 시의 의견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이종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로 선정된 4개도에 똑같은 건교부 공문이 시달 되었는데 유독 충주시만 전지역을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은 것 아닌가 ?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을 하면서 혁신도시 선정을 위한 토지가격 안정에만 신경을 썼지 시 전체의 경제적인 영향은 고려했나 ? ○ 7월에는 전지역을 묶는 것으로 건의하고 다시 8. 4일에 기업도시주변 6면만 축소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 ○ 허가구역 확대지정된후 10월중 토지거래건수가 852건으로 전년동기 1,251건 대비 32%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데 ? ○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의 논리로 혁신도시의 유치와 이주민들의 대토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의회간담 회시 혁신도시 발표후 바로 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대토를 하려면 보상 절차 등 최소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때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아닌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문제 때문에 도에 가서 이거 사기 친 거 아니냐며 따진 적이 있고 그 당시 도에서 전지역이 허가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 ○ 지가가 너무 갑자기 올라가고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전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임 ○ 8. 4공문을 올릴때는 이미 도에서 전지역을 묶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이고 지금 공문을 올려도 소용없다고 했는데 당시 부동산업계 대표 등이 시장님을 찾아와 부동산업계 체면도 있고 하니 공문으로 요구해 달라고 해서 다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냥 공문만 올려 달라고 해서 6개면만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올리게 된 것임 ○ 8. 31 부동산 조치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으로 꼭 허가구역 확대 지정 때문만은 아니고 지가하락에 약간의 영향은 끼쳤다고 생각함 ○ 혁신도시 발표후 바로 해제를 할 경우 대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대로 놔 둘 수는 없다고 판단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도에 사기친 거 아니냐 라고 한 것은 시가 이번 확대 지정이 잘못됐다고 자인 ? ○ 8. 4일 시민의 반발을 무마용 공문을 도에 보낸 건 시민을 상대로 사기 친 거 아닌가? ○ 증인께서 원주도 전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시장님과 의장님께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 뜻도 있지만 왜 다른데는 안 했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항의한 것임 ○ 도에 시의 입장을 전달하니 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그냥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음 ○ 의장님한테 잘못 보고를 해서 다음날 착오가 있었다고 다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음
고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15일 도에 보고한 의견이 충주시의 지금까지의 의견이고 8.4일 올린 것은 충주시의 의견이 아니죠 ? ○ 지적과에서는 혁신도시 유치와는 관계없이 지가상승만을 따져서 허가구역을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의 방침은 바뀐게 없는데 부동산 중계인협회에서 이런 의견을 보내달라고 해서 도에 형식적으로 공문을 올린 것임 ○ 그때에 혁신도시는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로 순전히 부동산 지가상승률만 따져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은 것임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11일자 건교부 공문과 7. 12일자 충북도 공문을 시장님께 어떻게 보고했나 ? ○ 간담회에서 시장님은 분명히 기업도시 반경2km정도만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전지역을 묶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7. 15일자 도제출 공문에는 시장님이 왜 결재를 했는가 ? ○ 충주시장의 대외공문을 특정 단체가 요구한다고 시의 뜻과 전혀 상충된 공문을 함부로 만들어 보낼 수 있나 ? ○ 허가구역 확대지정후 8. 9 일자로 관련 기관, 단체에는 알렸는데 의회 안 알린 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내용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다 지정할 것이라고 보고했음 ○ 첫번 선결시 건교부의 방침을 설명드렸지만 시장님 입장이 분명히 무엇인지 그때는 잘 몰랐음 ○ 공문을 보낼 때는 도에서 그냥 아무 관계도 없고 어차피 다 끝난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인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 그건 잘못되었다고 인정함

<p>○ 허락한 표면에 물을 뿐 아니라 물에 흡수되는 물을 포함한 물을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 허락한 표면에 물을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 허락한 표면에 물을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 허락한 표면에 물을 허락하는 경우 ○</p> <p>○ 허락한 표면에 물을 허락하는 경우 ○</p> <p>○ 허락한 표면에 물을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 허락한 표면에 물을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p>제거를 허락하는 경우 ○</p>

□ 이장섭 중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이종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의 지가상승율 3.78%는 기업도시 선정의 영향도 있지만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으로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지가가 현실화 된 것으로 보는데 이 걸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 수렴과정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은 것 아닌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나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어 문제가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전지역을 묶은 것은 일견 사유재산의 침해 문제도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시민들에 조세부담 등 문제도 있고 또 혁신도시를 기필코 유치해서 충주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한 충정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람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과 실무팀에서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하자고 했을때 부작용 등을 검토해 보았나 ? ○ 지적과 실무자들의 의견만 들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제 관련 부서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 않았나 ? ○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사안인데 시간이 없다고해서 지적과 몇 명의 공무원에 의해서 시 정책이 결정된 것은 잘못인데 ?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결정된 후에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시민들에게 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재 했음 ○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고 기획부동산 등 외지 투기현상이 심각해서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가 어려웠음 ○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은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처리토록 하겠음 ○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 사후 의회와 협의없이 한 것에 대하여 유구무언이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해제할 계획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의 근본적 목적이 혁신도시 유치에 있는 것으로 혁신도시 발표후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지사께 건의해서 해제할 계획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정태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결정이 시간이 없다고는 하지만 다수시민과의 협의가 어려웠다면 공인중계사협회 등과 협의했어도 충분했는데 이런 점이 없다는 점을 볼때 시장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보는데 이점 증인은 어떻게 생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진들의 의견과 분석자료를 근거로 행정원칙에 따라 판단해서 결재한 것이며 소관부서에서 관련 전문가들에게 사전 의견을 구하는 등 결재권자인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이 업무처리 절차이고 전문가가 아닌 시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단독 결정여부는 잘 모르겠음

3.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건

□ 경제건설국장 추진상황보고시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시설이 위탁협약 제10조에 의한 수탁자 자체 사업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인지 ? ○ 2004년 봉제시설비 예산으로 어린이집 초기시설을 구입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미 노총에 2005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설치를 약속한 것 아닌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시에서 목적했던 사업이 아니고 노총에서 제안한 사업이었으나 법에 명시된 사업이고 해서 처음에는 인건비 정도 최소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었으나 노조특유의 힘을 바탕으로 한 밀어붙이기식으로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집행부와도 내적으로 문제가 많았음 ○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되었지만 앞으로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대체 하겠음
김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한국노총이 아닌 다른 수탁자를 선정 해서 운영할 용의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이 권한을 갖고 있다하더라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 일방적 파기는 상당히 어렵고 현재 나름대로 노총측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 홍종수 증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허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내충인동 직원이 위수탁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했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한테 왔던 기억은 없음
고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을 문화프로그램으로 판단한 사유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은 근로자복지관 운영자침에도 있고 노동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해서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종하	○ 2003. 4월의 근로자복지관 운영방향은 무상위탁을 통해 관리비 최소화를 내용으로 위탁한 후 불과 3개월만에 운영 방향을 바꾼 이유는?	○ 복지관 건립이 마무리될 무렵에 한국 노총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당초의 방침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계획이 변경되면서 절차적으로 약간의 무리가 있었음
김기선	○ 2004년도에 봉제교실 예산으로 어린이집 주방기기를 구입한 이유는?	○ 어린이집 문제는 2003년도부터 노총에서 제기해 왔는데 과다한 예산요구로 내부적으로는 계속 미루어 왔기 때문에 주방기기 구입은 제가 조금 앞서 나간 면이 있음
김대식	○ 2004. 11. 24일 노총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요청했고 경제과에서는 11.30일에 지하층에 식당 설치를 결정했는데 이를 누가 결정했나?	○ 노총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계장,과장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였음
김종하	○ 어린이집 추진시 시중의 어린이집 운영실태 등 조사는?	○ 외부적인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음
이종갑	○ 어린이집 시설장소가 1층 43평과 2층 일부 이렇습니까? ○ 위탁계획서 제2조 2항의 주민자치센터로 쓰기로 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 예 ○ 예

□ 김익준 증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허종희	○ 성내충인동 직원이 위수탁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했나?	○ 저는 기억이 없음
김대식	○ 2004년 당초예산에 2,430만원을 요구했다가 수정예산으로 1억 2,748만원을 요구했는데 주로 봉제교실 예산이죠?	○ 예 그렇게 기억함

□ 김형배 증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허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예산설명시 봉제교실을 설치한다고 설명한 예산을 어린이집 집기구입으로 변경한 이유는 ? ○ 어린이집 계획이 노총에서 요구되었을 때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5. 18일 한노총의 요구로 의회 산건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때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설명되어서 봉제교실 작업대와 기타 칸막이 등 내부시설 집행잔액 중 1,100만원으로 어린이집 주방집기를 구입한 것임 ○ 시 관내 103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대개 운영시간이 보통 오후 3, 4시에 끝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한 노동부 지침에 권장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임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보육 시설은 1층에 그리고 조리실은 지하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 법적 기준과 시장조사 등 충분한 검토후 예산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노총의 요구로 시장지시에 따라 그냥 예산을 요구한 건가 ? ○ 2004. 11. 24일 노총에서 정식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요청해서 불과 6일만인 11. 30일에 어린이집 식당설치를 결정했음 이는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 ○ 시에서 구입한 주방집기는 어떻게 했나 ? ○ 결국 당초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 아닌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복지 증진차원에서 제 개인의 소신에 따라 선택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2003. 8월 건물이 준공된 후 입주당시 한국노총에서 모든 완벽한 시설이 되어야 입주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음 ○ 2005년도 어린이집 시설에 대비하여 미리 집행잔액으로 식당집기를 구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이는 과장인 제가 전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임 ○ 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4개소에 관리 전환시켰음 ○ 예 맞습니다

□ 최용태 증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우종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별다른 요인도 없는데 그대로 추경예산에 올려서 결국 노총과 의회간 갈등을 부추긴 이유는 ? ○ 봉제교실예산으로 어린이집 주방집기를 사주어 결국은 예산낭비만 초래한 것 아닌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감된 당초예산을 추경에 올리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사업 특성상 시급히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1회 추경 예산에 재계상한 것임 ○ 시에서는 설마 의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 안해 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관련 물품을 미리 구매했던 거고 사업승인이 됐으면 문제가 없던 물품이고 사업승인이 안되어 결과적으로 불요불급한 물품이 됐지만 사회복지과를 통해 필요한 시설에 관리 전환해 주었고 보육시설을 전체로 미리 물건을 산 것이 문제가 되었음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사업성이나 법적 기준 등을 검토하였나 ? ○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은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보다는 한국노총의 압력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것인가 ? ○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키로 한 43평은 어떻게 됐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이나 수지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았고 시설기준은 아동복지법하고 영유아 보육법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음 그래서 이 사업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그런 시설을 점검해 보고 했던 것임 ○ 노총사태 때문에 성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시 들어올 의향이 없는 상태고 현재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김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회허가장소는 시청공원 앞인데 시청분수대를 내준 것은 싸움터를 빌려주어 한국노총대 의원간 힘겨루기를 하게 한 것 아닌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차례에 걸쳐서 집회허가 받은 곳으로 이동하라고 했지만 무단점거하고 있어서 시에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이점이 상당히 부담된 것이 사실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정태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에서의 정당한 예산 심사를 대상으로 한 데모 인데 시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은 총체적으로 볼때 김태환이라는 한 단체의 수장이 개인적인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빚어낸 하나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함 또한 시에서 보육시설의 부당성을 전혀 몰라서 그 사람한테 설명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했었으나 문제해결을 노동쟁의식으로 해결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얘기를 수긍했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다고 판단됨

□ 이상우 증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당초예산 계상시 경제건설국장 이었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기술직이라 근로자복지관 관리나 계획에 사실상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름

□ 김용래 증언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시설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로부터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적이 있나? ○ 어린이집시설의 사업성이나 법적 기준 등을 검토했나 ? ○ 정계의견서에 보육시설 설치 여건이 부적합하다고 지적 되어 있는데 이를 인정하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총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한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보겠다는 보고를 들었고 시와 노총,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밀어 붙이는 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음 ○ 이미 진행되던 사업이어서 사업성을 따질 시기가 아니었고 또한 노총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음 ○ 책임자로서 지도감독 등이 부족해서 물의가 생긴 것으로 이 점 사과드림

□ 노희경 증언 (추가 증인조사)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허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가 근로자복지관에서 왜 나갔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노총의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요구해서 위원회에서 나가는 것으로 심의, 결정하였으며 시와 노총간의 계약이 존재했는지는 그 당시에 잘 몰랐음
황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와 노총간의 계약사항인 주민자치센터 사용여부를 심의 할 자격이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당시 이미 새로 동사무소가 완공되었고 또한 시에서 계약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되었음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된 성내충인동사무소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국악교실을 할 공간은 있었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된 동사무소에 국악교실을 위한 방음시설이 되어 있었고 동사무소와 거리도 멀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음
정태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총에서 유선과 공문으로 나가라고 요구했을 때 시에 이를 공문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나왔어야 하지 않았나 ? ○ 시에서는 당시 협약서를 보여 주었다고 하는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당시 협약서가 있는지 몰랐으며 시에 정식 공문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인정함 다만, 당시 상황을 지역경제과에 보고하고 조치요구를 유선상으로는 했음 ○ 협약서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금년 4월 시의회 의장님께서 자치위원장에게 복사해서 준 것으로 동장님을 통해서 받아 보았음

□ 김진해 증언 (추가 증인조사)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복지관 예산 계상시 자료 검토는 충분했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가 오기전인 '04년 2월 24일전에 이미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가 11. 24일에서야 정식으로 한국노총에서 제안이 되었는데 그때 충분히 사업성 등이 검토되었나 ? ○ 사업성 등 여러 문제로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 ○ 어린이집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 집기를 먼저 구입한 동기는 ? ○ 기획감사과의 감사결과에 보면 행정절차의 하자, 예산낭비의 소지 등 관리업무 소홀을 지적하였는데 이를 승복하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를 대비분석해서 근로자들이 퇴근후 아동 복지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한국노총에서 계속 지원요구를 했고 한국노총이 지역의 노사화합 안정에 기여 등 한국노총의 특수성 때문에 꼭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음 ○ 어린이집 예산 요구도 있고 해서 집행 잔액예산으로 실무부서에서 자체 판단해서 집행하였음 ○ 지적사항을 승복함
허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시설의 법적기준, 장날 등 주변입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봤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총에 수차례 그러한 난맥상을 얘기했는데 계속 우겨서 그렇게 되었음
황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예산요구가 협약 서와는 위배되지 않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최소한도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한도는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닌 거 같음

4. 충주시장에 대한 증언청취

□ 호암택지 개발사업 유보 건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4월 지역개발과에서 작성하여 부시장까지 결재를 한 호암택지개발 추진계획에 결재를 안한 이유는 ? ○ 2005년 6월 16일 시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20일쯤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했나요 ? ○ 호암택지 개발사업의 결정적인 유보 이유는 ? ○ 기업도시 결정은 7월 8일이고 호암택지사업은 4,5월경에 유보 결정하였는데 ? ○ 호암택지는 200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기업도시는 5월쯤 신청된 사업인데 기업도시때문에 호암택지개발을 유보했다는 것이 논리상 자연스럽지 않은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7월 선결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고 그후 2005년 5월경 추진계획이 올라와서 그때 정확한 내용을 알고 기업도시 유치를 준비하는 상황이니 유보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음 ○ 반대라고 한적은 없고 시기가 적절치 않으니 유보하라고 했음 ○ 기업도시내 25만평, 첨단산업단지내 5만평, 연수택지 10만평 등 택지 과잉공급으로 자칫 연수택지와 같은 난개발이 우려되고 호암지 생태공원 보호차원에서 유보 결정을하게 된 것임 ○ 4. 13일 기업도시 컨소시엄을 구성, 4. 14일에 기업도시 신청서를 냈고 이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였기 때문에 유보를 검토한 것임 ○ 호암택지 개발사업의 추진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지금도 같은 소신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이종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교부에서 2005년 11월 3일에 우리시의 유보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았고 앞으로 시의 결정과 반대로 추진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 ○ 일반 시민들은 기업도시 때문에 호암택지도 분양이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 유보신청시 의회와 한번도 협의를 한적이 없는데 여하튼 시장님은 유보가 옳고 의회는 원래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교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라면 해야함 그러나 기업도시 바로 옆에 30만평의 택지개발을 개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함 ○ 그렇게 수요가 생긴다면 2-3년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함 ○ 저는 지금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장이하 담당공무원들은 본 사업이 자연스럽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 ○ 시의 중요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다가 갑자기 시장님의 독단적 결정으로 유보결정 등으로 바뀌어 대외신뢰도, 토지공사와의 관계, 일관성 등에 문제가 되고 이래서 본 특위도 열리게 되었는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기업도시가 유치되지 않았다면 호암택지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을 것이고 앞서 말한대로 4. 13일에 기업도시 유치를 준비했었고 호암택지 건은 5월에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 ○ 택지 개발을 동시에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은 과잉공급으로 상당기간 방치가 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임
고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암동 주민들은 지금도 왜 사업 유보의견을 시에서 냈는지 또한 유보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었는지도 잘 모르는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은 저도 이해하며 앞으로 충분히 더 홍보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암택지 지구내 주민이 약 380명이고 이중 39명이 의견을 냈는데 반대는 10명이었음 시의 반대유보가 주민여론과 합당한가 ? ○ 유보결정과 관련 환경파의 반대공문, 시정정책자문회의의 반대 의견 등은 유보를 위한 수순이고 또 공람결과도 유보와 주민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며 2년여 동안 시의 요구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는 점 등 여러 면에서 유보결정의 논리가 빈약한데 시장님 혼자 유보 결정을 한 것은 상당한 오류가 아닌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람과정의 세부적 내용은 실무적으로 추진된 것이고 그 것은 확인하지 못했음 ○ 지금도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음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년여 동안 부시장이 하전 공무원이 추진해온 호암택지 사업이 예측이 잘못된 것인가? ○ 「청정삶터 녹색충주21」 등 찬성 의견인 단체, 공람결과 주민의견의 다수가 찬성하는 등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정책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13일 이전에는 기업도시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임 ○ 결론적으로 유보의견 결정은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건교부에서 우리 시 의견을 받아 주길 바랄 뿐임
고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 때문에 호암택지지구를 유보해야 한다면 호암택지 사업이 주민들에게 공람공고 등 발표되기 전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호암택지 개발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이에 따라 검토지시를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정태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위 전까지 의원간담회 등의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 또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 <p>여러 말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제92조에 보면 지방자치사무의 모든 통할권은 시장에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규칙 제16조의 사무처리 전결규칙에 따른 사무처리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p> <p>호암택지개발사업은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부시장 등이 토지공사를 방문, 견의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현재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로</p> <p>앞서 여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유보결정의 이유와 결정과정이 잘못됐고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한 업체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유보된 것은 아닌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를 위해 택지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 개발로 인한 택지공급은 앞으로 5-10년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전망인데 호암택지로 인한 택지공급이 과잉문제와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연수지구 택지개발 활성화는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개발 기대에 따른 가수요이기 때문에 이 것이 기업도시에 대한 선분양이므로 나중에 기업도시를 개발 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함

□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지정 건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8월 4일 6개면 주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달라고 이전 제출의견과 다른 시장명의의 공문을 보냈는데 ? ○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전지역을 묶은 즉흥적이고 실수가 있는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 의견은 ? ○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지역 지정을 도에 요구할 때 실무책임자나 시장님의 판단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첨단산업단지 주변 토지보상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이주민의 대토문제 때문에 전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되는 12월까지 지정하고 이후 시의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축소조정을 건의할 계획임 ○ 그 것도 일부 승인하며 통할권자로서 책임을 지겠으며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완료되면 누구보다 먼저 축소하고 싶은 사람이 저임 ○ 시인함
고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가 충주로 선정되면 토지보상이 끝난후 해제신청을 하겠다는 뜻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와 충분히 의논해서 의견을 따르겠고 지금부터 미리 축소 조정 방안을 의논해서 입지선정후 신속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해주면 고맙겠음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가 유치되면 오히려 지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가안정을 위해 허가구역을 전지역으로 묶었다는 논리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 ○ 의원간담회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부근 반경 2km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중지가 모아지는 대로 조치할 계획임 ○ 기본원칙은 기업도시가 제대로 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적을 수록 좋다고 생각함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건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총과 사전에 어린이집 시설을 약속한 적이 있나? ○ 한국노총의 집회장소가 잘못된 점에 대하여 조치는? ○ 어린이집 입기구입 때문에 실무 직원만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잘못된 건데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속된 거는 없었음 ○ 수차례 설득 및 종용했으나 역부 족이었음 ○ 알겠음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복지관내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과 부합하지 않고 또 위탁 계약상 줄 수 없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사업비를 삭감한 것인데 아무런 상황변동이 없이 동일한 과목의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1차 추경전에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었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행정으로 복지관 운영에 대하여는 실국장에게 다 위임한 상태로 추경보고 여부는 서류를 안봐서 잘 모르겠음

VII. 勤勞者綜合福祉館 現場訪問調查

- 방문일시 : 2005. 12. 1(목) 10:00~
- 참여위원 :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1명
- 진 행 : 운영실태(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응답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요지 (지역경제과장)
정태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양대 노총이 공동이용할 계획은 ? ○ 근로자가 중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 ○ 규모가 너무 커서 시설이 제대로 잘 이용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 ○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 43평의 활용계획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대 노총간 노선 차이 등으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12회에 걸쳐 한국노총과 협의해 온 결과, 근로자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과 탁구교실을 계획 중임 ○ 당초 성내충인동사무소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 현재 빈 공간으로 있어 성내충인동에서 하시라도 이용이 가능함
김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구교실, 공부방 등을 운영하면 운영주체는 ? ○ 1층 43평은 시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인 관리는 수탁자인 한국노총에서 담당함 ○ 탁구교실로 운영할 1층 68평만 한국노총에서 관리하고 43평은 행정시설 등으로 이용할 계획을 모색중임
허종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관리에 대한 인건비를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 규정대로 운영시 6명의 관리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3명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음

-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 -
조사자료 요구목록

I. 조사계획서로 요구자료

1. 공통요구 자료

- 사업별 관련 담당자 현황 (담당자부터 국장까지)
- 사업별 추진상황 보고서
- 사업별 관련 증빙자료
 - 최초 상급부서 시달 공문 사본
 - 업무보고 또는 내부 협의문서 사본
 - 정책 입안단계서부터 정책결정까지 관련문서 사본
(회의서류, 회의록 등)
 - 상급부서 보고문서 사본
 - 상급부서 의견 제출 후 대응 관련문서 사본
(자체 감사·조사자료 포함)
 - 기타 유보 건의(확대지정 건의)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 사본

2.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실태

- 사업계획 입안부터 건립까지 관련서류 사본
- 관련 예산집행 현황 및 관련서류 사본(2003년~현재까지)
 - 시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
 - 보조금으로 집행한 예산(정산서류 포함)

II. 1차 특위간담회 후 요구자료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 8. 4일 도에 제출한 공문원본
- 내부 업무보고 등 업무와 관련된 서류원본
 - 2005. 7. 12일 충북도 공문 시달이후부터
 - 2005. 7.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심의자료 제출시까지

2. 호암택지 개발사업 추진유보

- 관련 시정정책자문회의 회의록 원본
- 시청 직원 등 부동산 동향자료
 - 언론, 환경단체 등에서 호암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어
 - 이에 대한 시 자체 조사자료 등 관련된 자료 제출

3.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 기획감사과의 자체 조사(감사)결과보고서 및 담당직원 징계요구와 관련된 자료